

제23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한  
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# 檢 討 報 告 書

【김학영 의원 대표발의】



2022. 6. 20.

社 會 建 設 委 員 會  
專 門 委 員

#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## 檢 討 報 告 書

### 1. 경 과

의안 제489호로 2022년 6월 8일 김화영 의원 외 4명으로부터  
발의되어 2022년 6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### 2. 제안이유

통합공공임대아파트의 공동 전기료 및 공동 수도료를 지원함  
으로써 거주 주민들의 관리비 경감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의  
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- 가. 공동주택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항목 신설(안 제5조)  
- 통합공공임대아파트의 공동 전기료 및 공동 수도료 지원

#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공동주택관리법」, 「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」  
나. 예산조치 : 필요 시 반영  
다. 입법예고 (2022. 6. 8. ~ 6. 14.): 의견 없음

## 5. 검토의견

### ○ 본 조례안은

- 통합공공임대아파트의 공동 전기료 및 공동 수도료를 지원함으로써 거주 주민들의 관리비 경감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,

### ○ 주요 내용은

- 안 제5조제2호에서는 공동주택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항목에 “통합공공임대아파트의 공동 전기료 및 공동 수도료”를 지원사항에 신설하였음.

### ○ 검토 결과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85조에 근거하여 최저소득 계층, 저소득 서민, 젊은 층 및 장애인·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통합공공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 및 공동수도료를 지원함으로써 입주민들의 관리비 부담 경감 등 주거복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,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규정되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.

# 참 고 자 료

## 1 공동주택관리법

- 제85조(관리비용의 지원)**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- ② 국가는 공동주택의 보수·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용자할 수 있다.

## 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

제2조(공공임대주택) ① 「공공주택 특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호가목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.

1. 영구임대주택: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
  2. 국민임대주택: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「주택도시기금법」에 따른 주택도시기금(이하 “주택도시기금”이라 한다)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
  3. 행복주택: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, 사회초년생,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
- 3의2. 통합공공임대주택: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, 저소득 서민, 젊은 층 및 장애인·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

<제①항4호~제②항 생략>